

'98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11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18일

3. 제안이유

농촌진흥원청사 신축이전 부지내에 차고 및 시험실의 신축에 따른 '9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〈재산의 취득〉

○ 농촌진흥원 시험실 및 차고신축

·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77-1(농촌진흥원 이전신축부지내)

· 규 모 : 1,281m²(시험시설 1,016m², 차고 265m²)

· 기 간 : '98상반기

· 총사업비 : 1,028,184천원(국비 489,092천원, 도비 539,092천원)

※ 이전신축에 따른 경위

- 부지 매입의 건(도의회 의결 '93. 12. 16) : 231,406㎡
- 본관·연구동 건물신축(" " '94. 12. 30) : 10,248㎡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'98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

이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'98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
코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가공 및 분석등을 위하여 1,016㎡ 시험시설
과 차량관리를 위한 265㎡ 차고를 농촌진흥원 이전 부지내에 신축하는
것으로 이 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
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'98공유재산관리계획(안)